

사망보상금 청구서 제출

NYS Workers' Compensation Board는 업무상 상해나 질환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의 특별하고 절박한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망보상금 청구를 신속하게 해결하여 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유족들의 노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새로운 사건으로 갑자기 사망할 때 생존자는 사망보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혜택을 받아오던 근로자가 기존의 입증된 사고의 결과로 사망했다고 믿는 경우에도 사망보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망보상금 청구는 근로자의 사망으로부터 2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 신분이나 유족의 위치와는 상관없습니다.

혜택

청구가 입증된 경우 고용주의 산재보험사가 지불하는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혜택은 사망일부터 기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장의비 또는 추도비

장의비 또는 추도비는 위치와 실제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정산 가능합니다.

- 뉴욕시, Long Island, Westchester 및 Rockland 카운티는 최대 \$12,500.
- 다른 모든 NYS 카운티는 최대 \$10,500.

보상금

보상금(임금 손실)은 주당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1. 이전 52주 동안의 근로자의 평균 주급이 산정됩니다.
2. 보상금은 그 금액의 $\frac{2}{3}$ 이며 면세이고, 사망일에 적용되는 최대 보상금까지입니다.

자격

일반적으로 보상금은 다음과 같이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1. **배우자.** 사망 당시에 합법적인 결혼 상태인 배우자는 평생 보상금을 받습니다. 배우자가 재혼할 경우 배우자 보상금은 2년분의 일시불 보상금을 끝으로 종료됩니다. 자격이 되는

자녀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보상금을 그들과 나눕니다. 자녀가 연령으로 인해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배우자가 보상금 전액을 받습니다.
이혼한 배우자는 자격이 없습니다.

2. **자녀 및 장애인, 시각장애인 또는 기타 피부양자.** 18세까지의 자녀 및 공인 고등교육기관의 풀타임 학생인 23세까지의 자녀는 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장애인, 시각장애인 및 기타 피부양자는 평생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을 경우 이러한 생존자는 전액을 나누어 가집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산재보상법 (Workers' Compensation Law)에 따라 배우자와 보상금을 나누어 가집니다.
3. **근로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부모가 \$50,000를 받습니다. 이혼한 경우, 균등한 금액을 나누어 가집니다.
4. **근로자의 재산.** 위에 나열된 생존자가 없는 경우 사망한 근로자의 상속 재산이 \$50,000를 받습니다. 유언 집행자가 청구 절차를 완료할 것입니다.

의료 비용

사망보상금 청구에 의료 급여는 없지만, 근로자가 업무상 상해에 대해 별도의 청구를 한 경우 그 청구에서 의료 급여가 지불될 수 있습니다.

예시 1

근로자의 평균 주급은 \$1,200

보상금은 주당 \$800

자격있는 유일한 생존자인 배우자는 평생 또는 재혼할 때까지 주당 \$800를 받습니다

재혼 시에, 2년분에 해당하는 최종 보상금(이 예의 경우는 \$83,200)이 지급되고 종료됩니다.

예시 2

근로자의 평균 주급은 \$1,200

보상금은 주당 \$800

배우자는 주당 \$440를 받습니다

자격이 있는 동안 자녀는 주당 \$360를 받습니다 (산재보상법에 따른 분배)

자녀가 더 이상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배우자의 보상금은 평생 또는 재혼할 때까지 주당 \$800로 증가합니다

필요한 양식

사망보상금 청구는 아래에 나열된 특정 양식과 문서 세트를 사용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미리 모두 모은 다음 이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시간을 줄이고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각 양식의 필수 항목을 작성해야 합니다.

- 사망 사건 보상 청구서(Claim for Compensation in Death Case) (양식 C-62)
- 마지막으로 입회한 의사의 사망 증명(Proof of Death by Physician Last in Attendance on Deceased) (양식 C-64)
- 장의사의 매장, 장례 및 추도 서비스 비용 증명(Proof of Expenses for Burials, Funerals and Memorial Services by Undertaker) (양식 C-65)
- 유족 보상금 진술서(Affidavit For Death Benefits) (양식 AFF-1)

이 양식은 Board의 웹사이트 wcb.ny.gov에서 근로자 (Workers) 또는 양식(Forms) 섹션에 있습니다.

증빙 문서

청구에 필요한 증빙 문서는 사망 근로자와 생존자의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자격에 대해서는 혜택(Benefits) 섹션을 참조하세요.) 혜택을 청구하려면 아래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필요합니다.

- 사망 진단서(Death certificate) - 장의사를 통해 입수 가능
- 근로자의 출생 증명서(Birth Certificate)
- 결혼 증명서(Marriage certificate) (해당하는 경우)
- 이혼 판정(Divorce decree) (해당하는 경우)
- 자격있는 자녀 또는 피부양자의 출생 증명서
- 공인 교육기관의 재학 증명서(Proof of Enrollment) (해당하는 경우)
- 사회보장 수여 서신(Social Security Award Letter) (해당하는 경우)

유용한 도움

산재근로자 옹호국(Office of the Advocate for Injured Workers)이 유족의 산재보상 유족 보상금 수령을 도와드립니다. 옹호국으로부터 양식 패키지를 받은 경우 양식을 작성하여 다음 주소로 보내주세요.

Workers' Compensation Board
Centralized Mailing Address
PO Box 5205
Binghamton, NY 13902-5205

또한 Board의 웹사이트 wcb.ny.gov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절차 관련 도움이 필요한
경우, 산재근로자 옹호국에
(800) 580-6665로 전화하거나
AdvInjWkr@wcb.ny.gov로
이메일을 보내세요

법적 대표성을 가진 유족이 가장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변호사와 협력하면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뉴욕주 Workers' Compensation Board는 혜택을 적절하게 제공하고 법 준수를 장려함으로써 근로자와 고용주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Workers' Compensation Board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cb.ny.gov를 방문하세요.

 facebook.com/NYSWCB

 twitter.com/NYSWorkersComp

 instagram.com/nysworkerscompboard

 youtube.com/newyorkstateworkerscompensationboard

 WCB 알림 등록: wcb.ny.gov/Notify

